

# 경상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소속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

## 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년 8월 12일, 신호광 의원 외 15명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8월 1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 
(2022년 8월 25일 상정, 제안 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 
토론, 의결)

## 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신호광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전기재해의 예방과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등을 위한 계획 수립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과 피해 복구 사업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농어업 전기재해 관련 실태조사를 규정함(안 제5조)
-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 교육과 업무의 위탁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(안 제7조)

#### 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채식)

##### 가. 본 조례의 제정은

- 농어업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의 예방과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됨

##### 입 법 사 례

| 조 례 명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| 2020.12.30. 제정 |
| 울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  | 2021.05.20. 제정 |
| 전라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| 2021.05.20. 제정 |
| 강원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  | 2022.03.04. 제정 |

##### 나. 주요 내용은

- 본 조례안은 목적, 정의,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, 지원 사업, 실태조사 등 본칙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
-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

##### 용어의 정의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어업인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.
2. “전기재해”란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.

##### 『전기안전관리법』 제2조제2호

“전기재해”란 전기화재,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.

- 안 제3조는 도지사가 농어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‘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계획’을 수립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
  - ⇒ 각 호에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
- 안 제4조는 전기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각호에서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
  - ⇒ 안전점검과 수리 등 예방사업과, 피해복구 지원 사업이 핵심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는 조례 제정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
-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재해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함
  - ⇒ 실태조사의 세부내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조사를 유연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임
- 안 제6조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를 규정함
  - ⇒ 교육의 핵심내용으로는 예방 및 안전 교육과, 전기시설 사용 및 관리 교육으로 나누었으며, 그 밖에 필요한 교육을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안 제7조는 시·군 및 관계기관,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
  - ⇒ 조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필수적으로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
- 안 제8조는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함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전기재해로부터 농어민들을 보호하여 더욱 안전한 농어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
-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도 전국 동·식물시설, 농업기계, 어선의 화재는 각각 881건, 177건, 73건으로 나타남. 이 중에서 전기로 인한 화재는 각각 410건(46.5%), 49건(27.6%), 33건(45.2%)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함
- 농어업은 산업 특성상 수리시설, 내연기관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이는 특히 전기재해에 취약하며, 재해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, 시설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취약하여 재해 발생 시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농어업의 전기재해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여 정책 지원을 통한 농어업 환경 개선이 기대되며, 이는 신규농어업인, 특히 청년들에 대한 농어업 인식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조례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문제가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

#### 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#### 6. 토론요지 : 없음

#### 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